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32
----------	-------

발의연월일 : 2026. 10. 8.

발 의 자 : 김상훈 · 강대식 · 이현승
이달희 · 윤한홍 · 박충권
이만희 · 엄태영 · 고동진
김재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중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하의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가업의 상속공제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 수도권 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 기준마저 강화될 경우 지방에 소재한 기업은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제1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해당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00억원”을 “300억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45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00억원”을 “400억원(국가전략기술기업의 경우에는 6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600억원”을 “600억원(국가전략기술기업의 경우에는 90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 3년 이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항에서 “본사”라 한다)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사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로 이전한 기업
2.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그 지정 이후 창업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가.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할 것
 - 나.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사업장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그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 ----- ----- ----- ----- ----- ----- ----- ----- ----- <u>--제외하되, 제1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해당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한다</u> ----- ----- ----- ----- ----- ----- ----- ----- -----.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1. ----- -----

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제2항 및 제11항-----

-----.

⑤ -----

-----제1항 및 제11항-----

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 4. (생략)

<신설>

⑥ ~ ⑩ (생략)

<신설>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 3년 이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항에서 “본사”라 한다)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사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지

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로 이전한 기업

2.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그 지정 이후 창업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가.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할 것

나.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사업장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그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